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62호 2021. 3. 12.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3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38호 도계역 주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5
- 삼척시 고시 제42호 사방지 설치공사 사방지 지정고시 ----- 11
- 삼척시 고시 제4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8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305호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1
- 삼척시 공고 제311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호산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31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1 - 3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 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9.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삼척로 3806-7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3.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30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806-7	20210309	신축건물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 으로기존도로명활용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145-10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무사길 345	20210309	신축건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2건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함척로 3806-7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무사길 345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30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함척로 3806-7		20210309	신축건물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 도로명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145-10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무사길 345		20210309	신축건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고시 제2021-39호

도계역 주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계역 주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삼척시장

I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개요 및 범위	사업명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석탄도시에서 관광·문화·복지 도시로의 재창조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중심시가지형 (총괄사업관리자)	916.6	2021~2025년 (5년)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삼척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사업위치	도계읍 전두리 60번지 일원	사업면적 336,000㎡ (뉴딜 216,272㎡)
사업 필요성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산업 쇠퇴로 도시경쟁력이 감소함에 따라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한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필요			
사업내용 및 효과	마중물(8개), 지자체(10개), 부처연계(2개), 공기업(2개)		상세 ㉓ 참조	
재원조달방안	마중물 265억원(국 150, 시 100, 기금 15), 지자체 사업 355.1억원, 공기업 투자사업 296.5억원		상세 ㉔ 참조	
국가지원항목 및 필요성	마중물 사업비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상세 ㉕ 참조	
활성화계획도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계획의 목표

비전	석탄도시에서 관광·문화·복지도시로의 재창조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목표	도계콤팩트시티(경제기능 회복), 활력증진 네트워크(중심상권 회복), 생활복지 특화도시(주민중심 생활복지)

수립방향

- ☑ 폐광지 지정에 따른 도시공간 재활용 방안 필요
- ☑ 주변 지역자원과 연계한 개발방안 및 전략 수립
- ☑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Goal

정책목표

-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꿈의 도시 도계”
- 휴식과 활력이 넘치는 “빛나는 도시 도계”
-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 도시 도계”

사업목표

- 도계콤팩트시티 (경제기능 회복)
- 활력증진 네트워크 (중심상권 회복)
- 생활복지 특화도시 (주민중심 생활복지)

성과지표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 방문객 증가 중심상권 회복
- 삶의 질 향상 정주의식 상승 주거만족도 상승

Strategy

추진전략

도계 콤팩트 시티

- ☑ 스타트업 “도계光업소” 전략1) 전문가 및 일자리 창출 전략2) 창업 지원 전략3) 맞춤형 주거지원
- ☑ 문화·관광 공급소 “도계급수탑” 블랙아트타운 “까막동네” 전략1) 문화·예술거점지 조성 전략2) 특화 상업시설 전략3) 공공플랫폼 조성

활력증진 네트워크

- ☑ 도계로 리뉴얼 프로젝트 전략1) 특화자원 활용 전략2) 특화거리 조성 전략3)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 ☑ 전통시장 브랜드화 전략1) 문화·관광 특화시장 전략2) 콘텐츠 개발 전략3) 브랜드화 교육

생활복지 특화도시

- ☑ 웰빙케어, 헬스케어 전략1) 치유 프로그램 전략2) 예방 프로그램 전략3) 지자체 사업과 연계
- ☑ 힐링쉼터 전략1) 커뮤니티시설 조성 전략2) 노인복지 향상 전략3) 주민만족도 향상

③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단위: 억원)

구분	단위 사업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사업비	사업내용
합계				916.6	
소계				265	
마중물 사업	A 도계 컴팩트 시티	① 스타트업 “도계光업소”	H/W S/W	85.7	청년/광부 창업교육 및 창업공간, 미디어 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성
		② 문화·관광공급소 “도계급수탑”	H/W S/W	31.7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도계 관광거점지 형성 및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③ 블랙아트타운 “까막동네”	H/W S/W	94.5	근대산업유산인 석탄 및 지역자원을 활용 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B 활력증진 네트워크	④ 도계로 리뉴얼 프로젝트	H/W S/W	21.2	석탄, 유리와 연계한 가로특화거리 조성, 테마거리 축제
		⑤ 전통시장 브랜드화	H/W S/W	16.4	유리를 테마로 한 특색있는 전통시장 조성, 특화먹거리 판매소, 상인역량강화교육
	C 생활복지 특화도시	⑥ 웰빙케어(예방) 프로그램	H/W S/W	9.5	웰빙케어센터 조성 및 주민중심의 예방 서비스 제공
		⑦ 헬스케어(치유) 프로그램	S/W	3	주민중심의 의료복지(치유) 서비스 제공
		⑧ 힐링쉼터 조성	H/W	3	지역주민 소통 공간인 쉼터 조성
소계				-	
부처 연계사업	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H/W	-	도계전두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②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H/W S/W	-	도계 전두시장 광장 캐노피 설치 및 포장 마차 리모델링,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소계				313.1	
지자체 사업	① 도계 G-city 작은영화관 건립		H/W	-	지역주민 영상문화 향유 기회 제공
	② 도계역 광장 조성		H/W	5	휴게공간 등 도계역 광장 조성
	③ 추추파크 “스위치백트레인” 도계역 연장사업		H/W	4.9	스위치백트레인 도계역까지 운행 연장
	④ 복합교육연구관		H/W	-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지역교육활동 강화
	⑤ 도계 평생 학습관		H/W	-	평생학습 시설 조성
	⑥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및 갤러리조성사업		H/W S/W	-	70년대 광산사택을 리모델링한 새로운 관광문화 상품 개발
	⑦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H/W	10	작은영화관 건립과 연계하여 영상미디어 교육·제작지원 등의 센터 조성
	⑧ 도계 노인요양원 조성		H/W	85.2	스마트 헬스케어와 연계하여 의료 취약계 층을 위한 노인요양원 조성
	⑨ 도계역 앞 주차장 조성		H/W	8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한 주차장 조성
	⑩ 블랙아트타운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H/W	200	탄광플랫폼, 광차투어시설, 석탄테마공원, 친환경수변공원 조성 등의 개발
소계				338.5	지자체 사업비 42억 포함
공기업 투자사업	① LH 청년창업지원 행복주택		H/W	152.5	행복주택 94호 조성
	② LH 강원삼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H/W	186	국민임대주택 120호 조성

※ 상기 도시재생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 청년 창업지원과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거점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도계역 앞 부지 개발을 통한 도계지역의 중심상권 회복 및 방문객 증가
- 생활복지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거만족도 상승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단위: 억원, m²)

기반시설종류	세부사업명	사업비	위치	면적(규모)	사업내용	비고
문화시설	문화·관광공급소 "도계급수탑"	30.4	전두리 60번지 일원	·연면적 1,280m ² 지상1~2층	인포메이션센터 및 전시관 조성	
문화시설, 공원	블랙아트타운 "까막동네"	93.4	전두리 60번지 일원	·전시관 4개소 1,405m ² ·광산체험시설 1,200m ² ·문화예술공원 9,317m ²	전시관 및 광산체험 시설, 문화예술공원 조성	
도로	도계로 리뉴얼 프로젝트	17.2	도계로 (전두시장~ 읍사무소)	·탄탄대로 L=500m ·대학문화테마로 L=300m	도로정비 및 테마보 행로 조성, 경관조명, 도로가로환경 정비	
도로	전통시장 브랜드화	15.4	전두리 81-119번지 일원	·전두시장 석탄테마 L=180m ·산책로 조성 L=100m	석탄테마 전두시장 조성, 출입구 개선, 오십천변 산책로 조성 및 경관정비	
공동이용시설	스타트업 "도계光업소"	79.2	전두리 60번지 일원	·연면적 2,400m ² 지상1~2층	커뮤니티공간, 미디어 센터, 창업공간 등 조성	
공동이용시설	웰빙케어 프로그램	6.5	전두리 48-13번지	·연면적 270m ²	웰빙케어센터 조성 (도계 노인요양원 내)	
공동이용시설	힐링쉼터 조성	3	전두리 181-17번지	·대지면적 538m ²	커뮤니티시설 및 편의시설(파고라 등) 조성	

⑤ 공공 및 민간 자원 조달계획

(단위: 억원)

구분	단위 사업	세부사업명	합계	사업비					사업 기간
				마중물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국비	지방비				
합계			916.6	150	100	355.1	296.5	15	
소계			265	150	100			15	
마중물 사업	도계 콤팩트 시티	스타트업 “도계광업소”	85.7	42.4	28.3			15	'21~25
		문화관광공급소 “도계급수탑”	31.7	19	12.7				'21~25
		블랙아트타운 “까막동네”	94.5	56.7	37.8				'21~25
	힐력증진 네트워크	도계로 리뉴얼 프로젝트	21.2	12.7	8.5				'21~25
		전통시장 브랜드화	16.4	9.9	6.5				'21~25
	생활복지 특화도시	웰빙케어 프로그램	9.5	5.7	3.8				'21~25
		헬스케어 프로그램	3	1.8	1.2				'22~24
		힐링쉼터 조성	3	1.8	1.2				'21~22
	소계			-	-	-			
부처 연계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19~20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						'20
소계			313.1			313.1			
지자체 사업	도계 G-city 작은영화관 건립		-			-			'19~20
	도계역 광장 조성		5			5			'20~21
	추추파크 “스위치백트레인” 도계역 연장사업		4.9			4.9			'20~21
	복합교육연구관		-			-			'17~20
	도계 평생학습관		-			-			'18~20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및 갤러리 조성사업		-			-			'17~20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10			10			'21~22
	도계 노인요양원 조성		85.2			85.2			'21~25
	도계역 앞 주차장 조성		8			8			'20~21
	블랙아트타운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200			200			'24~25
소계			338.5			42	296.5		
공기업 투자사업	LH 청년창업지원 행복주택		152.5			25	127.5		'21~24
	LH 강원삼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186			17	169		'21~24

㉔ 예산 집행 계획

(단위: 억원)

구분	연차별 집행계획						
	합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916.6	31.8	177.9	165.5	205.5	229.7	106.2
마중물 사업	265	-	90.6	56.1	55.4 (기금 15)	56.7	6.2
부처 연계사업	-	-	-	-	-	-	-
지자체 사업	313.1	31.8	71.3	-	10	100	100
공기업 투자사업	338.5	-	16	109.4	140.1	73	-

㉕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모니터링단을 주민들로 구성하고 사업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과정을 점검,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점검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는 매년 12월 중 평가지표 측정을 시행·완료하고, 측정방법은 통계조사, 계측조사, 현장조사 등 여러방법을 활용하고 필요 시 2가지 이상의 방법을 복합 활용
- 도시재생지원센터(현장지원센터 포함)는 주민 모니터링단과 함께 성과관리·사업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토대로 추진실적 보고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에 제출
- 매년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평가 결과는 환류 및 계획 조정사항 결정 시 활용

㉖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㉗ 기타사항

- 관련도서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삼척시 전략사업과(본관 3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전략사업과 도시재생1팀(☎033-570-40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고시 제2021-42호

2021년 사방댐 설치공사 사방지 지정고시

2021년 사방댐 설치공사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삼척시장

1. 지정내역 :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외 15필 / 3,086㎡
2. 지역내역 : 2021년 사방댐 설치공사
3. 지정사유 : 2021년 사방댐 설치공사 대상지로서 「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함
4.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적 요 : 사방지 지정도면은 삼척시(산림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함.

※ 문의처 : 삼척시 산림녹지과(033-570-3866)

- 붙임 1. 사방지 지정 내역서 1부.
2. 사방지 지정 구역도면 1부. 끝.

2021년도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및 사방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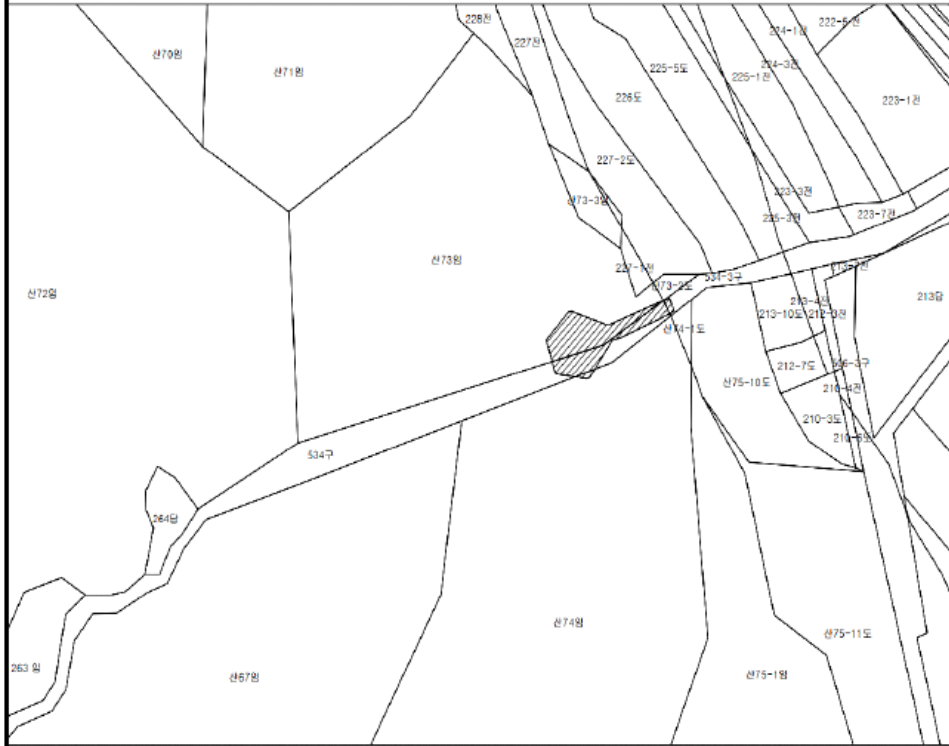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사업명)
						성명	주소	
시군읍면	리동	지번						
계		14필지		411,093	6,844			
	점리	산 175-1	임	1,488	20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9/2반	최*복	사방댐 설치공사
	도계	산21	임야	14,340	24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2길 90, 703동 709호 (쌍문동,한양아파트)	오*암	
		산26	임야	7,967	23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64, 105동 404호 (정상동,정상청솔1차아파트)	임*순	
		산173	임야	24,521	1,016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370-20	이*기	태풍 마이삭-하이선
	이천	산471	임야	67,537	2,626	강원도 춘천시 교동 19-19(1통3반)	김*웅	마이삭-하이선
		산182-2	임야	62,579	465	서울특별시 노원구 우이천로2나길 14, 103동 703호 (월계동,홍화브라운빌 아파트)	박*식	산사태
		산19	임야	25,686	55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19, 2604호 (장안동,장안삼성쉐르빌)	이*홍	재해복구사업
	노곡	산44-3	임야	15,771	2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98, 707동 304호 (백현동,백현마을)	김*주	
		산25-1	임야	46,612	452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43 (남양동)	김*태	
	근덕	279-1	답	1,729	47	강원도 동해시 승정2길 6 (송정동)	김*자	사방댐 설치공사
	신기	산56	임야	13,143	4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774	임*혁	태풍 마이삭-하이선
	가곡	산82	임야	27,769	760	경기도 오산시 청호로 23-22, 103동 1303호 (청호동,엘리시아아파트)	최*식	산사태
	하장	산128	임야	101,257	342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명재로 643-15	권*화	재해복구사업
		산89	임야	694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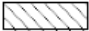
* 주의사항 : 고시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성명 및 주소 ** 처리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번호: 제2021 - 호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보기>
 : 사방지

<지정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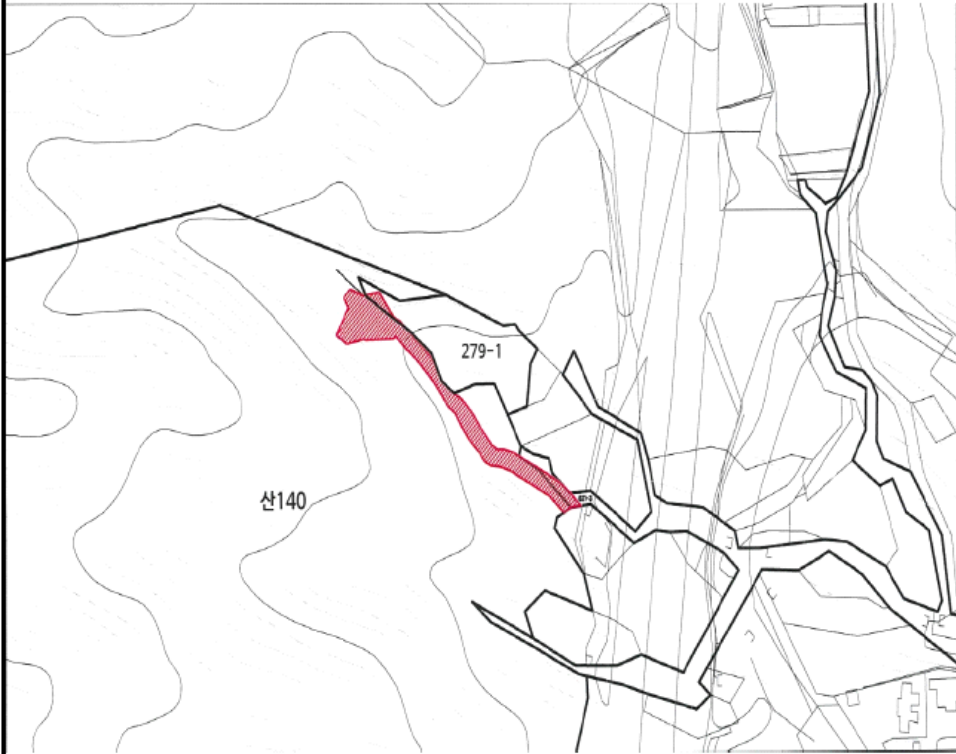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산73	임	10,056m ²	258m ²	제2021-호 (2021-03-10)
	산74	임	23,744m ²	8m ²	
	534	구	2930m ²	163m ²	

400mm×500mm
 (보존용지(1급) 70g/m²)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번호:제2021 - 호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보기>

 : 사방지

<지정내역>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산140	임	174,908㎡	979㎡	제2021-호 (2021-03-10)
	279-1	전	1,729㎡	47㎡	
	521-3	구거	10,291㎡	71㎡	

400mm×500mm

(보존용지(1급) 70g/㎡)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번호:제2021 - 호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보기>

 : 사방지

<지정내역>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삼척시 도계읍 점리	산174-1	임	5,454㎡	26㎡	제2021-호 (2021-03-10)
	산175-1	임	1,488㎡	204㎡	
	산173	임	4,364㎡	132㎡	
	197-1	천	922㎡	182㎡	

400mm×500mm
(보존용지(1급) 70g/㎡)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2. 30.>

번호:제2021 - 호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보기>

 : 사방지

<지정내역>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삼척시 노곡면 하군천리	산15	임	37,488m ²	609m ²	제2021-호 (2021-03-10)
	160-1	천	6,045m ²	107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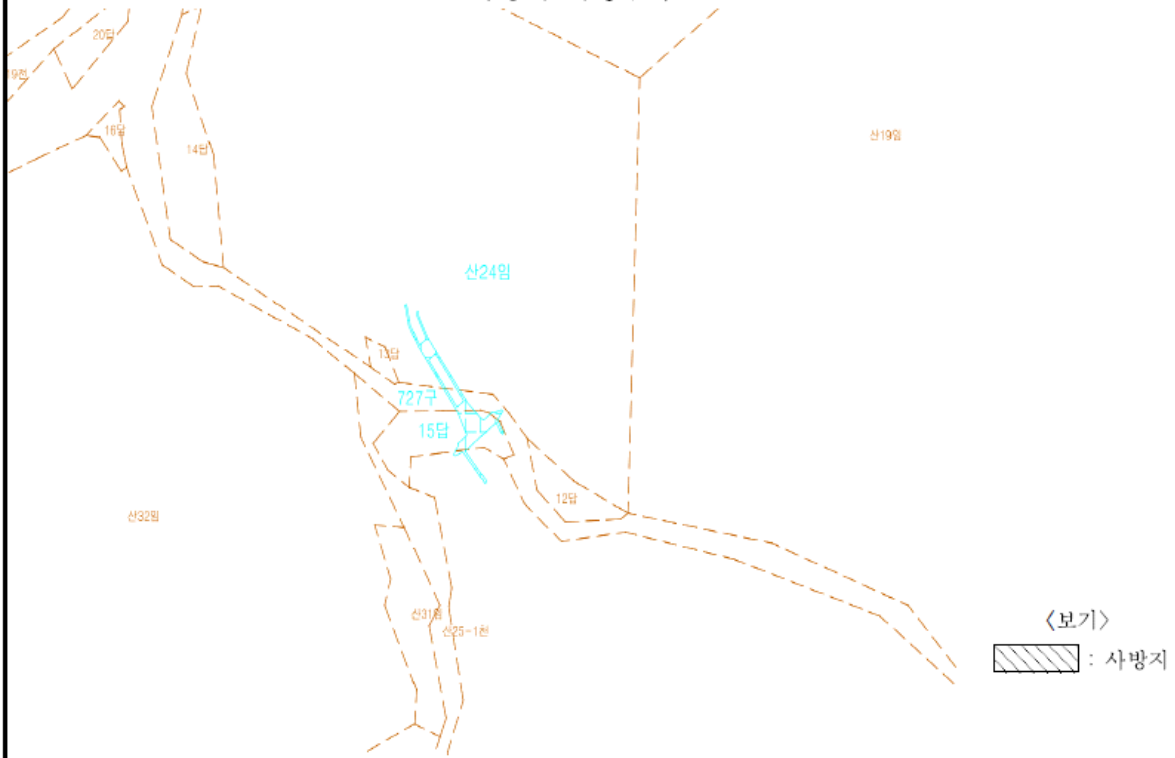
400mm×500mm

(보존용지(1급) 70g/m²)

■ 사망사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번호:제2021 - 호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지정내역>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산24	임	32,628㎡	83㎡	제2021-호 (2021-03-10)
	727	구	30,717㎡	43㎡	
	15	답	982㎡	154㎡	
	산25	임	81,819㎡	20㎡	

400mm×500mm
(보존용지(1급) 70g/㎡)

삼척시 고시 제2021 - 4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 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12.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안로132-1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3.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6-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안로 132-1	20210312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지역위치 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성북동 58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359-180 (성북동)	20210312	가설건축물	20090626	지형지물(오십천) 명칭활용
3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261-11, 261-12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10-32 (사직동)	20210312	가설건축물	20090626	동지역중심부도로 (기존도로명)
4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기리 17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기길 122	20210312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5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263-3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893	20210312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계	주소	건수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6-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안로 132-1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359-180 (성북동)	20210312	20210312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 지역위치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성북동 58	강원도 삼척시 증왕로 110-32 (사적동)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기길 122	20210312	20210312	가설건축물	20090626	지형지물(오십천)명칭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사적동 261-11, 261-12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기길 17	강원도 삼척시 기곡면 오목리 263-3	20210312	20210312	가설건축물	20090626	동지역중심부도로(기준도로명)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기리 17			20210312	20210312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기곡면 오목리 263-3			20210312	20210312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공고 제2021-305호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삼척시장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특화체험마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운영 활성화를 통한 폐광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시설의 명칭·위치 및 종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안 제3조)
-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 시설의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11조)
- 관련규정의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3. 8. ~ 3. 28.(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자원개발과
- 전화 : 033-570-4057
- FAX : 033-570-3187
- 전자우편 : yozzang@korea.kr

5. 참고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시정소식-뉴스/미디어-입법/공고/고시”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특화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삼척시 특화체험마을(이하 “특화체험마을”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사리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삼척시 도계읍 구사2길 68
2. 점리 하늘아래 신주빛는 마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370-41

제3조(시설) 특화체험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사리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황토방 1동, 펜션 4동, 공동작업장 1동 등 관광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
2. 점리 하늘아래 신주빛는 마을: 체험동 1동

제4조(관리·운영 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체험마을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체험마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화체험마을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특화체험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특화체험마을 숙박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이용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② 특화체험마을의 정기 휴무일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는 제외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이 변경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전예약) ① 특화체험마을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시설 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예약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하며, 기한 내 미납부 시 예약이 취소된다.

1. 일반 사전예약: 예약신청 후 3일 이내
2. 시설 이용일 48시간 이전 예약 시: 이용 당일 14시까지
3. 시설 이용 당일 예약 시: 1시간 이내

제8조(이용료 및 체험료) ① 특화체험마을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이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특화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이용료 및 체험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이용료 감면) ① 이용료의 감경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광사업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반환) ① 납부된 시설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하여 사용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특화체험마을 시설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 등의 반환은 사유 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1조(시설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리자의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공중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을 위협에 이르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받은 경우
6.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이용료 및 체험료(제8조 관련)

○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성수기 (주중, 주말)	비수기	
			주중	주말
숙박시설 A (일반동)	28㎡ / 4인 1동	100,000	70,000	100,000
숙박시설 B (황토방동)	41㎡ / 6인 1동	130,000	90,000	130,000

※ 기준인원 초과 시 10,000원/명 추가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 초과시 시설사용료의 10%,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성수기

- 성수기는 하계 7월 3주차 ~ 8월 3주차로 정함
-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임
- 비수기 주말은 매주 금, 토, 공휴일 전날이 해당됨

○ 체험료

[구사리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구분	체험인원 (최소/최대)	비용(원/1인)	비고
다도체험	5 / 20	10,000	
산채 채취체험	5 / 30	15,000	

[점리 하늘아래 신주빛는 마을]

구분	체험인원 (최소/최대)	비용(원/1인)	비고
자연체험	10 / 30	10,000	
다슬기잡기	10 / 30	15,000	
제철 농산물 수확체험	10 / 30	10,000	
두부만들기	10 / 30	15,000	
포도껍질 천연염색체험	5 / 10	15,000	
테라리움	5 / 20	15,000	

[별표 2]

시설 이용료 감경 기준 (제9조제1항 관련)

○ 숙박시설 이용료의 감경

감 경 대 상	감 경 비 율 (성수기 제외)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	30%
나.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분증 등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별표 3]

이용료 등 환급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내 용	환급 기준		
	기준	성수기(주중, 주말 포함)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예약 당일 취소	선납금 환급	선납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5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의 8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90% 공제 후 환급
	기준	비수기	
		주중	주말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선납금 환급	선납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연락없이 불참	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
예약·선납된 경우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특화체험마을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명 :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2021-311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호산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강원도 고시 제77-59호(1977.04.1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강원도 고시 제2019-159호(2019.04.19.)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삼척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호산공원]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

삼척시장

1. 사업의 위치 및 종류

- 가. 위치 :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산17-3번지 일원
 나. 종류 : 호산공원(근린공원)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한국남부발전(주)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 사업의 규모

규 모		규모	토지내역	비 고
사 업 명	위 치			
호산공원(근린공원) 조성사업	호산리 산17-3번지 일원	33,332.9㎡	호산리 산17-3번지 일원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1. 4. 30.

5.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가. 일시 : 2021. 3. 12. ~ 2021. 3. 26.(14일간)
 나. 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도시개발 부서 ☎033-570-344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불입)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호산리	산16-1	임	14,876	8,18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 남부발전	
2		산16-6	임	9,918	8,41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 남부발전	
3		산16-7	임	2,975	616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 남부발전	
4		산17	임	21,036	11,438.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 남부발전	
5		251-4	체	11	1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 남부발전	
6		318	전	1,474	52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 남부발전	
7		318-1	전	9,203	3,18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 남부발전	
8		322	전	420	42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 남부발전	
9		496-19	구	1,485	22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 남부발전	
10		496-22	구	388	31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 남부발전	
소계		10필지		61,786	33,332.9	-	-	
합계		-		61,786	33,332.9	-	-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033-570-3446, 033-570-3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1.종류 및 명칭

2.사용대상 토지 및 물건

3.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4.의견

5.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1. . . .

의견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삼척시장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